



## 신탁 금융상품을 이용한 노후설계

박정희 선임연구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개발·공급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고령화 추세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신탁업법 개정 이후 포괄신탁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국내 금융업계도 다양한 신탁 금융상품을 공급해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고령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신탁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공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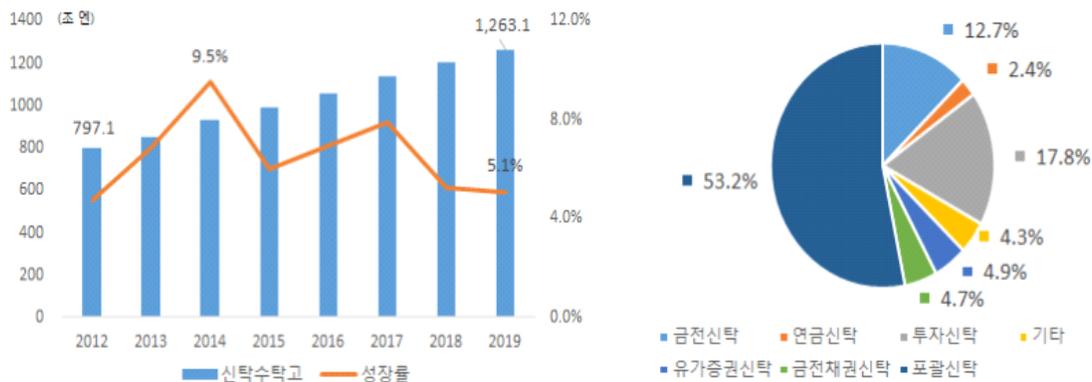
- 고령자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지원신탁<sup>3)</sup> 등과 같은 전문 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임
- 또한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수령 가능하게 하며, 치매보험 등 고령자 관련 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관련 상품을 개발·공급한다는 계획임
  - 이는 기대여명 연장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인이 되는 노노(老老)시대에 고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설계해야 하는<sup>4)</sup>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방안이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sup>5)</sup>

1)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산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그 외 처분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용·처분하는 행위임  
 2) 금융위원회(2020. 8. 31),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3) 고령자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4) 2019년 12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8.6%에 비해 ‘준비되지 않은 가구’ 55.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노후파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5)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는 14.8%(2018)에서 46.5%(2067) 수준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 일본은 2004년 ‘신탁업법’ 개정 이후 수탁가능재산의 제한을 없애고 미국 등과 같이 포괄주의 방식으로 수탁범위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재산을 수탁하는 포괄신탁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sup>6)</sup>

- 일본 신탁시장의 수탁고는 FY2010 767.3조 엔에서 FY2019 1,263.1조 엔으로 10년 만에 1.5배 가량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수탁재산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포괄신탁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함
  - 포괄신탁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설정하는 신탁으로 일본 신탁시장 수탁고의 약 53.2%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신탁시장의 수탁고는 2019년 말 기준 968.6조 원으로 금전신탁이 483.9조 원(49.95%), 재산신탁이 484.5조 원(50.01%)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일본의 포괄신탁에 해당하는 종합재산신탁은 0.4조 원으로 비중이 0.04%에 불과함<sup>7)</sup>

〈그림 1〉 일본 신탁수탁고 추이와 신탁종류별 잔액 비중



자료: 신탁협회, “신탁수탁 개황”, 연도별

자료: 신탁협회, “신탁통계편람, 상품 종류별 잔액”

■ 일본은 포괄주의 변경 이후 고령층에 특화된 후견제도지원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을, 가입자가 사망 후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생명보험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12년 2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 후 대중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체결부터 변경 해지까지의 결정이 모두 가정법원의 지시하에 이루어져 법정후견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유용할 수 없음
  - 일본의 후견제도신탁 이용자 수는 도입 당시 98명으로 시작해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신탁 금액은 약 9,231.7억 엔에 달함<sup>8)</sup>

6)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국내 신탁시장의 규제 및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일본의 포괄주의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 7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담보권이나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생명보험신탁을 이용한 신탁은 사실상 수탁할 수 없는 상황임

7) 금융감독원(2020. 6. 18),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 유언대용신탁<sup>9)</sup>은 본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다 사망 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체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탁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하는 노후자산 관리법임
  -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본인이 사망 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재산을 분배하는 다양한 신탁을 설계할 수가 있음
- 생명보험신탁<sup>10)</sup>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등에 자산관리 및 상속설계의 일환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가입자의 사망 이후 유족의 안정적 생활이나 미성년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며,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한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해 보험가입자가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형태임
  -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이 사망 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 그 외 일본 고령층의 자산가들은 증권사, 은행 등에 금전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투자위탁회사에서 운용·지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운용결과에 대한 수익이나 손해는 판매회사를 통해 교부되는 상품임<sup>11)</sup>

■ 금융업계는 다양한 신탁 금융상품을 공급해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층에게 양질의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금융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차매인구 수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등에 따른 고령자의 치매 및 장기간 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가구 의존적 형태의 대응은 더 이상 불가능한 현실임
- 금융업계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성년자나 후견인에게 적절한 방식의 신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kiri**

8) 대법원 사무총국 가정국(2020. 6. 9), “후견제도지원신탁 등의 이용 상황(後見制度支援信託等の利用状況等について)”  
 9) 2012년 도입된 우리나라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최근 판례에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와 신탁을 통한 경영권 상속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수원지부 성남지원 민사3부, 2020년 4월)  
 10)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명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11) FY2020 신탁상품 잔액별 투자신탁상품의 비중은 17.8%(224조 433억 엔)로 금전신탁 12.7%(160조 4,321억 엔)에 비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주식, 해외펀드 등 다양한 자산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임